

의안번호	제105호
의결 연월일	2014년 월 일 (제336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4년 12월 1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2월 11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민선6기 「함께하는 충북, 행복한 도민」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, 도민 친화적, 합리적·탄력적 조직으로 전환
- 한시기구인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업무 효율증대를 위한 업무이관 및 농산물 종자보급 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기구조정 (△1단)

-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폐지 : 존속기간 만료

□ 분장사무 조정

- 우량잡종의 생산·보급업무 농산사업소로 이관(안 제24조, 제46조)
- 농업기술원 → 농산사업소
-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 관련사무 조정(안 제28조)
- 환경측정망 운영 → 환경측정망·경보제 운영
-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·공급 업무 삭제(안 제46조)
- 국가사무 환원에 따른 농산사업소 사무 조정
- 세종사무소 소관사무 범위 조정
-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→ 중앙행정기관, 국회, 정당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”를 “실·국·본부의 설치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안전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환경국, 혁신도시 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

제13조의2를 삭제하고, 제13조의3을 제13조의2로 한다.

제24조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.

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를 둔다.

제28조제2호 중 “환경측정망 운영”을 “환경측정망·경보제 운영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보급종”을 “우량잡종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2호 중 “농산물 보급종자”를 “우량잡종”으로 한다.

제56조의2제1항 중 “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세종시”라 한다)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”을 “중앙행정기관, 국회, 정당”으로 한다.

제56조의4제2호 중 “세종시 내 중앙행정기관”을 “중앙행정기관, 국회, 정당”으로 한다.

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포도연구소	옥천군 관내
마늘연구소	단양군 관내
수박연구소	음성군 관내
대추연구소	보은군 관내
와인연구소	영동군 관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<u>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안전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환경국,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(이하"통합추진지원단"이라 한다),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u></p>	<p>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<u>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안전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환경국,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u></p>
<p>제13조의2(통합추진지원단) <u>통합추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</u> 2. <u>통합시 비전 및 지역발전방안 마련</u> 3. <u>하부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방안 수립</u> 4. <u>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</u> 5. <u>통합시 교육발전방안 마련</u> 6. <u>기타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사항 수행</u> 	<p><삭 제></p>
<p>제13조의3(혁신도시관리본부) <u>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6. (생략) 	<p>제13조의2(혁신도시관리본부) <u>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6. (현행과 같음)
<p>제24조(소관사무) <u>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8. (생략) 9. <u>우량 잠종·상묘의 생산과 시험 검사 및 잠건 검사용 기계운용 관리</u> 10. ~ 14. (생략) 	<p>제24조(소관사무) <u>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8. (현행과 같음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. ~ 13. (현행 10. ~ 14.와 같음)
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, 잠사시험장을 둔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를 둔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소관사무) <u>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	<p>제28조(소관사무) <u>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1. (생략)</p> <p>2. <u>환경측정망 운영</u> 및 환경오염물질·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환경측정망·경보제 운영</u> 및 환경오염물질·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</p>
<p>제4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<u>보급종의</u> 생산·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(이하 "농산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<u>우량잡종의</u> 생산·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(이하 "농산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6조(소관사무)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농산물 보급종자</u> 생산·보급에 관한 사항</p>	<p>제46조(소관사무)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우량잡종</u> 생산·보급에 관한 사항</p>
<p>제5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<u>세종특별자치시</u>(이하 "세종시"라 한다)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세종사무소(이하 "사무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<u>중앙행정기관, 국회, 정당과의</u>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세종사무소(이하 "사무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6조의4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세종시 내 중앙행정기관과의</u> 긴밀한 사무 연락 및 업무협조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제56조의4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중앙행정기관, 국회, 정당과의</u> 긴밀한 사무 연락 및 업무협조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